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한국수어를 발전시키고 수어 사용을 보장하여”를 “한국수화언어를 발전시키고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국수어’란”을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문화’란”을 “‘농문화’란”으로,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를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어통역’이란”을 “‘수어통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공기관 등’이란”을 “‘공공기관 등’이란”으로, “‘강서구’라 한다.”를 “‘강서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 사업
2. 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수어통역 지원 사업
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을 늘리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강서구민과 공공기관의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과 「한국수화언어 법」 에 따라 <u>한국수어를 발전시 키고 수어 사용을 보장하여 청 각 및 언어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한국수어</u>’란 대한민국 농문 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 의 언어를 말한다.</p> <p>2. ‘<u>농문화</u>’란 청각 및 언어장애 인(이하 ‘<u>청각장애인 등</u>’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p> <p>3. ‘<u>수어통역</u>’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p>	<p><u>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 ----- <u>한국수화언어를 발 전시키고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u> ----- ----- --.</p> <p>제2조(정의) ----- -----.</p> <p>1. “<u>한국수화언어</u>”(이하 “<u>한국 수어</u>”라 한다)란 ----- ----- -----.</p> <p>2. “<u>농문화</u>”란 ----- ----- “<u>청각장애인 등</u>”이라 한다----- -----.</p> <p>3. “<u>수어통역</u>”이란 ----- -----</p>

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및 강서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서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3조 (생략)

<신 설>

--.

4. “공공기관 등”이란 -----
----- “강서구”라 한다-----

-----.

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 사업

2. 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수어통역 지원 사업

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삭 제>

제4조(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서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어 통역사 인력을 늘리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수어 통역사와 수어 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신설>

제6조(지원)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강서구민과 공공기관의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을 늘리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삭제>

제7조 · 제8조 (생략)

제9조 · 제10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 발생 초기부터 한국수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로 하여금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농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들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